진 주 시

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687호 2020. 8. 12.(수)

조 례

진주시 조례 제1610호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진주시 조례 제1611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진주시 조례 제1612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진주시 조례 제1613호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17
진주시 조례 제1614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규 칙

진주시 규칙 제766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7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20-12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42

공 고

진주시 공고 제2020-1826호 2020년 5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 45
진주시 공고 제2020-1855호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6
진주시 공고 제2020-1859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50

회 람										

발행 : 진주시 편집 - 공보관(749-8069, 행정 8069)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조례 제1610호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상”을 “시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조례 제1611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주시공무원”을 “진주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상시 출장공무원 등의 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출장을”을 “상시 출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신설안>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주시 공무원----------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진주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별표 1]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관련)
비고 1 ~ 2 (생략)	비고 1 ~ 2 (생략)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생략)	4. (생략)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잉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조례 제1612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유족 및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유족(1명 한정)”을 “유족 및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 「고엽제 후유증의 등 환자지원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9.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10.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공유재산관 조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의 6호 중 “작업실”을 “작업실 및 기계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 강 료 (제13조제2항 관련)

과 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비 고
전문가반	6개월	주1회 3시간	200,000원	
중 급 반	3개월	주1회 3시간	120,000원	
기 초 반	2개월	주1회 3시간	80,000원	
취 미 반	1개월	주1회 3시간	50,000원	

※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에 드는 재료비 등은 별도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강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수강료 등의 감면) ① ----------. 다만,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유족 및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	3. ---------- 유족 및 가족
<신 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8. 「고엽제 후유증의 등 환자지원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신 설>	9.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신 설>	10.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4. ~ 7. (생 략)	11. ~ 14.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수강료, 체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삭 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	<삭 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	<삭 제>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	<삭 제>
6. (생 략)	2.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생 략)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설물 및 장비 사용료 (제6조제2항 관련)

시설 및 장비명		사용 기준	시설물(장비) 사용료	비고
강 당		3시간 기준	50,000원	
회 의 실		3시간 기준	30,000원	
숙 박 실		1인 1박 기준	20,000원 (1인 추가시 5,000원)	입실 17시이후 퇴실 9시까지
장비	일반 공구 (전기사용 안함)	1시간 기준	3,000원	
	기계 공구 (전기 사용)	1시간 기준	5,000원	

1. 강당 및 회의실은 목공예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2. 강당 및 회의실은 1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숙박실(1실) 기준인원은 6명(최대 8명)으로 하고, 만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행 시 무료 사용할 수 있다.
4. 교육, 체험 등을 위해 숙박실을 장기적(10일 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숙박 할인율(15%)을 적용한다.
5. 장비는 장비사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2,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6. 장비 사용 공간은 목공예전수관의 **작업실**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별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물 및 장비 사용료 (제6조제2항 관련)

시설 및 장비명		사용 기준	시설물(장비) 사용료	비고
강 당		3시간 기준	50,000원	
회 의 실		3시간 기준	30,000원	
숙 박 실		1인 1박 기준	20,000원 (1인 추가시 5,000원)	입실 17시이후 퇴실 9시까지
장비	일반 공구 (전기사용 안함)	1시간 기준	3,000원	
	기계 공구 (전기 사용)	1시간 기준	5,000원	

1. 강당 및 회의실은 목공예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2. 강당 및 회의실은 1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숙박실(1실) 기준인원은 6명(최대 8명)으로 하고, 만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행 시 무료 사용할 수 있다.
4. 교육, 체험 등을 위해 숙박실을 장기적(10일 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숙박 할인율(15%)을 적용한다.
5. 장비는 장비사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할 때 마다 2,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6. 장비 사용 공간은 목공예전수관의 **작업실 및 기계실**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별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조례 제1613호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진주시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홍보사절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축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 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해야 한다.

③ 단원은 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이나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축구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단주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장은 축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선수 3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독은 선수훈련과 경기를 지휘·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단원의 일상생활 등을 지도·관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④ 의무트레이너는 단원의 부상방지와 재활, 응급상황에서의 처치를 해야 한다.

⑤ 선수는 각종 훈련 및 대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한다) A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코치는 AFC B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KFA GK LEVEL 2 이상 지도자로 한다.

② 의무트레이너의 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또는 KATA AT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③ 선수의 자격은 1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고용계약) ① 감독은 제5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시장이 고용계약 하며, 코치 및 의무트레이너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1.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시 체육회(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② 단원 중 선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감독의 추천으로 서류심사 및 공개테스트 후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③ 단원의 고용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계약된 단원의 해임 및 재계약권은 시장에게 있다.

④ 단원의 고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 지도실적증명 및 자격증 사본(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1부

5. 선수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발행) 1부

6. 건강진단서 1부

제7조(해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고용기간에 상관없이 해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8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5일로 한다.

② 무단결근 및 사적인 결근은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를 준용한다. 다만 질병 기간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9조(겸직금지) 감독과 코치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보수 등) ① 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일부 선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제가 아닌 선수들은 고정급 없이 수당만 지급한다.

1. 연봉은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연봉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급식비, 목욕비, 상해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수단 숙소) 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축구단의 육성) ① 시장은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구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단 운영비
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제1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주시체육회, 축구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

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민축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단원 봉급 기준표(제10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초임연봉	비 고
감 독	30,000 ~ 40,000	
코 치	20,000 ~ 40,000	
의무트레이너	20,000 ~ 25,000	
선 수	20,000 ~ 25,000	

※ 재계약의 경우 연봉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별표 2]

단원 수당 지급 기준표(제10조 관련)

구 분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감 독	-	-	300,000원/회
코 치	-	-	300,000원/회
의무트레이너	-	-	300,000원/회
선 수	20,000원/회	100,000원/회	60분이상 : 300,000원 30~60분 : 200,000원 30분이하 : 100,000원 미 출 전 : 미 지 급

※ 경기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중 출전하지 못한 선수는 출전수당으로 50,000원/회을 지급하고 연봉제 선수는 승리수당만 지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일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조례 제1614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야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75를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경기장별구분		사용구분	평일	휴일	기준시간
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트랙	체육경기	60,000원	90,000원	
		체육이외	120,000원	180,000원	
	필드	체육경기	200,000원	300,000원	
		체육이외	400,000원	600,0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		체육경기	50,000원	75,000원	3시간
		체육이외	100,000원	150,000원	
진주공설운동장 (육상)		체육경기	15,000원	18,000원	
		체육이외	35,000원	45,000원	
천연잔디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경기	120,000원	180,000원	3시간
		체육이외	150,000원	200,000원	
인조잔디경기장 (축구)		체육경기	16,500원	23,000원	1시간
		체육이외	23,000원	33,000원	
보조경기장 (1면당)		체육경기	45,000원	50,000원	
		체육이외	70,000원	90,000원	
테니스장, 정구장		1코트당	15,000원	20,000원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		체육경기	40,000원	60,000원	
		체육이외	120,000원	150,000원	
진주실내체육관 (초전동)		체육경기	100,000원	150,000원	
		체육이외	150,000원	225,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초전동)		체육경기	200,000원	300,000원	
		체육이외	300,000원	400,000원	
풋살경기장		1면당	20,000원	30,000원	1시간
다목적경기장		1면당	20,000원	30,000원	3시간
궁도장		7사대	40,000원	60,000원	2시간
족구장		1면당	2,500원	3,500원	1시간

가. 1회 사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주간·야간으로 한다. 다만 천연잔디경기장·인라인경기장·다목적경기장은 3시간, 궁도장은 2시간, 인조잔디경기장(축구)·풋살경기장·족구장은 1시간의 사용을 1회로 한다.

나.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부과한다.

라. <삭제2008. 7. 4>

마. 야간조명 등을 사용할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바. 중앙 경기단체에 등록된 진주시 소재 육성팀이 동일종목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습사용료

경기장별	연습자구분		기준	요금
진주종합경기장 (트랙)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	1인 500원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	어린이 경로	개인	1회 2시간	2,000원
		단체	〃	1인 1,500원
		월회원	월	20,000원
	청소년 군인	개인	1회 2시간	2,500원
		단체	〃	1인 2,000원
		월회원	월	25,000원
	일반	개인	1회 2시간	3,000원
		단체	〃	1인 2,500원
		월회원	월	30,000원
진주공설운동장 (육상)	개인		1회 2시간	150원
	단체		〃	1인 120원
테니스장 정구장	개인		1회 2시간	1,500원
	단체		〃	1인 1,000원
	월 사용료	개인	월	25,000원
		단체	월	1인 20,000원
실내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학생		〃	1인 600원
진주실내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500원
	단체,학생		〃	1,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어린이 경로	개인	1회 3시간	2,000원
			월	30,000원
		단체	1회 3시간	1,500원
	청소년 군인	개인	1회 3시간	2,500원
			월	40,000원
		단체	1회 3시간	2,000원
	어른	개인	1회 3시간	3,000원
			월 자유반	60,000원
			월 강습반	70,000원
		단체	1회 3시간	2,500원

가.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연습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야간조명 사용 시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이용자는 제외한다.

다. 야간조명은 시설의 50% 이상 이용 시 사용가능하다.

라. 단체는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뜻한다.

마.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중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징수한다.

경기장별	연습자구분	기 준	요 금	비 고
진주실내수영장 (헬스장)	청소년	월	30,000원	
	어른	월	40,000원	
진주실내수영장 (에어로빅장)	청소년,어른	월	35,000원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	1인 500원	
탁구장	일반	1회 2시간	2,000원	
	학생	〃	1,500원	

[별표 2]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13조 관련)

구 분	조 건	감면율 (%)
전용 사용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3.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80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6.「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8.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위한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0

구분	조건	감면율(%)
연습사용료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2. 소년 · 소녀가장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3.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50
	4.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다만, 감경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0
	5.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50
	6.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그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50
	7.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전용 또는 연습사용료	1. 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진주시민축구단 소속선수(팀 포함)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및 경기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
	2. 시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100
	3. 관내 초 · 중 · 고 · 대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8.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삭 제>
1. 관내 초·중·고·대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체육시설 사용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1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③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1. 우천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삭 제>
② 이용 및 연습사용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75를 반환한다.
<신 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8월 12일

진주시 규칙 제766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은 10:00~22:00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시설 (장비) 사용허가(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인 (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남/여)
	주소 :	연 락 처 :
신 청 인 (법인·단체)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	

신청내용	※ 이용하려는 시설(장비)에 ○표를 합니다.			
	강 당	회 의 실	숙 박 실	장 비
	이용인원 : 명 / 장 비 명 :			
	이용금액 : 금 원			
	이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변경 내용또는 취소사유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장비)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시설물 및 장비 사용시 준수사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아래 규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사용자는 예약일자, 시간 내에 지정된 시설(장비)만을 사용절차에 맞게 취급한다.
3. 시설(장비) 기능 및 형상을 변형시켜서는 안되며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4.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화기물질 및 전열기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사용 후 반드시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 설	• 강당,회의실 이용시간 : 09:00~12:00, 14:00~17:00, 19:00~22:00 • 숙박실 [1실] : 입실 17시이후, 퇴실 익일 9시까지 (조례 별표 참조)
장 비	• 장비 사용자는 개인 상해보험 가입 유무 및 해당 요건에 ✓표를 합니다. □ 개인 상해보험 가입자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전수관 내 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수강한 교육생 □ 장비 사용 경력을 증명하는 목공 관련 교육 이수증 및 자격증 소지자 **※ 단, 공방운영자를 비롯해 사익 추구의 목적을 가진 자는 사용을 제한한다.**

【 장비 사용 주의사항 】

-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예약한 장비만 사용하되 본인이 직접 조작한다.
- 사용 도중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장비에 이상 발생 시, 곧바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변상 등 지적사항을 즉각 조치한다.
- 사용 지정된 품목 및 이용시간 외 장비 사용을 금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 발생 시 전수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 사용 지정 장비 및 이용시간 】

순번	품목	순번	품목	이용시간
1	슬라이딩 테이블쏘	6	목선반	**화 • 금요일** 14:00 ~ 17:00 **수요일** 10:00 ~ 12:00 14:00 ~ 17:00
2	수압대패	7	소형 목선반	
3	자동대패	8	루터 테이블	
4	밴드쏘	9	각끌기	
5	수평수직 벨트샌더	비고	※ 첨단 장비 제외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별지 제2호서식】

프로그램 및 체험(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인 (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남/여)
	주소 :	연 락 처 :
신 청 인 (법인·단체)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	

신청내용	교육 프로그램	※ 수강하려는 반에 ○표를 합니다.			
		전문가반	중급반	기초반	취미반
	일일 체험	체험분야			
		체험인원			
	금 액 : 금 원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변경 내용또는 취소사유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및 체험(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시간) ① 목공예전수관의 운영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단서신설>	제2조(운영시간) ① ----------. 다만,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은 10:00～22:00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진주시 고시 제2020-12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7.

진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49-5 외 9

부여 6건 -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참조
폐지 4건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5594)에 문의하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진주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37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금평로 134-11	20200807	20091130	사봉면의 금평들의 이름을 반영	
2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1007-1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267-3	20200807	20091130	행정구역명(정촌면)을 이용하여 정촌로로 명명	
3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83-6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루리산단로 123	20200807	20191216	루리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중앙도로를 의미	
4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829-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49-6	20200807	20100527	행정구역명(대곡면 단목리)을 이용하여 단목길로 명명	
5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10-3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16번길 5-4 (상대동)	20200807	20091130	동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85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길5번길 9	20200807	20091130	두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진주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비고
1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금평로 134-11	20200807	20091130	
2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287-3	20200807	20091130	
3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16번길 5-4 (상대동)	20200807	20091130	
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길5번길 9	20200807	20091130	

진주시 공고 제2020-1826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아래와 같음
○ 서류의 송달지: 아래와 같음
○ 서류의 명칭: 2020년 5월 부과분 지방세 독촉장
○ 서류의 내용: 아래와 같음

위의 서류를 2020년 7월 10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및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한을 2020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0일

진 주 시 장

연번	부과년월	과세번호	세목	총세액(원)	공시송달 대상자		사유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1	2020년 5월	001376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5,510	(주)농업회사법인금*산업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거소불명
2	2020년 5월	001382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9,990	(주)예*품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거소불명
3	2020년 5월	009013	자동차세(자동차)	112,340	정*모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거소불명
4	2020년 5월	0095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9,160	정*모	경상남도 진주시 큰들로	거소불명
5	2020년 5월	000094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0,900	(주)심*개발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폐업
6	2020년 5월	001119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48,090	최*철	경상남도 진주시 명거로	거소불명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0-1855호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2020. 4. 7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및 인원, 필수보직기간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노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규정 목적(안 제1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마련(안 제3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정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최소 1명이상 임용 의무화

라.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안 제4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지정

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진주시장(참조:아동보육과장)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아동보육과)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055-749-5459
3) E-mail : rani0928@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청소년팀(055-749-4867)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필수보직기간)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필수보직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0 - 1859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교육·수리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2) 집행기관 : 1,642명 ⇒ 1,644명(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624명 ⇒ 1,626명(증 2명)

- ○ 3급 : 1명(변동없음)
- ○ 4급 : 11명(변동없음)
- ○ 5급 : 84명(변동없음)
- ○ 6급 이하 : 1,526명(변동없음)
- ○ 전문경력관 : 2명 ⇒ 4명(증 2명)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3급 : 1명(변동없음)

4) 4급 : 11명(변동없음)

5) 5급 : 84명(변동없음)

6) 6급 : 381명(변동없음)

7) 7급 : 446명(변동없음)

8) 8급 : 400명(변동없음)

9) 9급 : 299명(변동없음)

10) 전문경력관 : 2명 ⇒ 4명(증 2명)

11) 별정직 : 3명(변동없음)

12) 연구직 : 4명(변동없음)

13)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1) 본청 : 748명(변동없음)

가) 정무직 : 1명(변동없음)

나) 일반직 : 743명(변동없음)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6명(변동없음)

○ 5급 : 33명(변동없음)

○ 6급 : 195명(변동없음)

○ 7급 : 240명(변동없음)

○ 8급 : 174명(변동없음)

○ 9급 : 93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명(변동없음)

다) 연구직 : 1명(변동없음)

라) 별정직 : 3명(변동없음)

2) 의회 : 25명(변동없음)

3) 직속기관 : 197명 ⇒ 199명(증 2명)

가) 일반직 : 162명 ⇒ 164명(증 2명)

○ 4급 : 2명(변동없음)

○ 5급 : 7명(변동없음)

○ 6급 : 47명(변동없음)

○ 7급 : 32명(변동없음)

○ 8급 : 63명(변동없음)

○ 9급 : 11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0명 ⇒ 2명(증 2명)

나)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4) 사업소 : 247명(변동없음)

가) 일반직 : 243명(변동없음)

○ 4급 : 2명(변동없음)

○ 5급 : 11명(변동없음)

○ 6급 : 51명(변동없음)

○ 7급 : 55명(변동없음)

○ 8급 : 59명(변동없음)

○ 9급 : 65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명(변동없음)

나) 연구직 : 3명(변동없음)

5) 읍면동 : 450명(변동없음)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제30조

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장(행정과장)

2) 팩　스 : 055-749-5129

3) E-mail : hsbgood@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조직관리팀(전화 055-749-8046)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67명이며”를 “1,66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642명”을 “1,64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69							
정무직 계	1							
단체장 (시장)	1							
일반직 계	1,626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3	3	7	11	1	15	14
6급이하 소계	1,526							
전문경력관 소계	4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5							
지도관	0			0				
지도사	35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69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 1,642명	1. ---------- 1,644명

신·구대비표(별표3)

현 행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67							
정무직 계	1							
단체장(시장)	1							
일반직 계	1,624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3	3	7	11	1	15	14
6급이하 소계	1,526							
전문경력관 소계	2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5							
지도관	0			0				
지도사	35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합계	**1,669**							
정무직 계	1							
단체장(시장)	1							
일반직 계	**1,626**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3	3	7	11	1	15	14
6급이하 소계	1,526							
전문경력관 소계	**4**							
별정직 계	3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4							
연구관								
연구사	4							
지도직 계	35							
지도관	0			0				
지도사	35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농기계 교육·수리 전문경력관 채용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 정원 증가 1,667명 ⇒ 1,669명(증 2명)

나. 관련조문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율 2.7% 반영
- 인건비 산출내역 (천 원)

구 분	연간인건비	산 출 내 역	비고
신규채용	72,886	○ 전문경력관 다급 3호봉 연 36,443×2명 = 72,886	

진 주 시 공 보

제687호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출	인건비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소계(a)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세입	국고보조금		-	-	-	-	-
	지방세수입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소계(b)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기획행정국 행정과장 박홍종

[별지 제3호서식]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재원조달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지방세	384,646	72,886	74,854	76,875	78,950	81,081
	세외수입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기획행정국 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시 규칙 제 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개정 2005.7.14, 2005.11.21, 2006.1.12, 2006.3.7, 2007. 6. 29, 2008. 7. 4, 2009.1.5,2009.7.7,2010.1.7,2010.8.3,2011.1.3,2011.9.22,2011.11.09,2011.12.20,2012.01.10, 2012.03.26, 2012.7.6, 2012.9.28, 2012.12.21, 2013.6.10,2013.12.12, 2014.5.9, 2014.11.18, 2015.1.21, 2015. 7.13, 2015.12.21, 2015.12.30, 2016. 3.23, 2016. 7.1, 2016. 12. 21, 2017. 2. 6, 2017. 8. 4, 2017. 12. 20, 2018.12. 21.,2019.6.10., 2019.12.26. 2020. 6. 25.>

부서별 /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소계	읍	면	동	비고
총 합 계		1,669	748 (5)	25	199	247	450	16	208	226 (2)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1,626	743 (5)	25	164	244	450	16	208	226 (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11	6	1	2	2					
	행정+기술	9	6	1		2					
	기술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84	33	3	7	11	30	1	15	14	
	행정	12	10			2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복지	13	4				9			9	
	행정+사회복지+농업	4		1			3			3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4					4	1	3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2	
	행정+공업	3	2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환경연구관	1				1					
	행정+농업	5					5		5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1		
	행정+농업+환경	1					1		1		
	행정+농업+시설	4					4		4		
	행정+농업+농촌지도관	3			3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	1			1						
	시설	4	4								
6급	소계	381	195	4	47	51	84	4	51	29	
	행정	108	66	4		13	25	1	13	11	
	행정+세무	20	11			2	7		3	4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1		
	행정+전산	5	5								
	행정+사서	3				3					
	행정+사회복지	33	14			2	17		3	14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1	1		
	행정+공업	10	8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	18			2		16		16		
	행정+농업+시설	4					4		4		
	행정+농업+세무	3					3	1	2		
	행정+농업+공업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	5	3		2						
	행정+보건+간호	6	1		2	3					
	행정+환경	7	7								
	행정+시설	38	23			6	9	1	8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1	1								
	전산+방송통신	3	3								
	사서	1				1					
	사회복지	4	4								
	공업	3				3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환경연구사	5				5					
	농업	2			2						
	농업+녹지	3	3								
	농업+시설	2	2								
	농업+수의+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10			10						
	녹지	3	3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9			19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진료	7			7						

	환경	3	3								
	환경+시설	1				1					
	시설	23	20			3					
	시설+방재안전	1	1								
	운전	5	4			1					
	사무운영	2	2								
	기계운영	5				5					
7급	소계	446	240	4	32	55	115	4	49	62	
	행정	151	78	3	1	16	53	2	19	32	
	행정+세무	16	7				9		6	3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36	14			3	19		4	15	
	행정+농업	8			1		7		7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보건+간호	4	1		2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환경	6	6								
	행정+시설	9	9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22	14			2	6			6	
	전산	4	4								
	전산+방송통신	1	1								
	사서	3				3					
	사회복지	23	9				14	1	7	6	
	사회복지+간호	1	1								
	공업	16	6		1	9					
	공업+농업	1			1						
	공업+시설	10	9			1					
	농업	11	1		3		7	1	6		
	농업+녹지	5	4		1						
	녹지	4	4								
	녹지+시설	1	1								
	수의	3	1		2						
	보건	11	4		7						
	보건+간호	1			1						
	간호	5			5						
	보건진료	2			2						
	간호+의료기술	3			3						
	환경	6	4			2					
	환경+시설	1				1					
	시설	40	36			4					

	시설+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	2								
	운전	8	5		2	1					
	사무운영	14	11			3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6				6					
8급	소계	400	174	8	63	59	96	3	33	60	
	행정	119	56	4	1	15	43		3	40	
	행정+세무	8	4				4		1	3	
	행정+전산	4	3	1							
	행정+사회복지	29	12			2	15		7	8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7			1		16	1	13	2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5	5								
	세무	8	8								
	전산	2	2								
	전산+방송통신	4	4								
	사회복지	18	7				11	1	4	6	
	사서	5				5					
	속기	1		1							
	공업	15	2			13					
	공업+시설	11	7		1	3					
	농업	2			2						
	농업+녹지	3	3								
	녹지	3	3								
	녹지+시설	1	1								
	보건	6	2		4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간호	24	1		23						
	간호	17			17						
	보건진료	4			4						
	의료기술	8			8						
	환경	6	5			1					
	시설	29	25			1	3		3		
	시설+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1	1								
	운전	8	4	1	1	2					
	위생	1				1					
	사무운영	14	7			3	4	1	2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5	1			4					

	기계운영	9		1	1	7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2	1			1					
9급	소계	299	93 (5)	5	11	65	125	4	60	61 (2)	
	행정	56	26 (5)	3		10	17		5	12 (2)	
	행정+세무	5					5	1		4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24	5			3	16		5	11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9					9	1	8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환경	2	1				1		1		
	행정+시설	3					3		3		
	세무	6	3				3			3	
	전산+방송통신	2	2								
	사서	7				7					
	사회복지	61	7			2	52	1	21	30	
	공업	22	2			20					
	공업+시설	7	2			5					
	농업	2			2						
	농업+녹지	2	2								
	녹지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2			2						
	환경	4	3			1					
	시설	17	7				10	1	9		
	시설+방재안전	2	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운전	19	9	1	3	6					
	위생	4	1			3					
	속기	1		1							
	사무운영	10	1				9		8	1	
	전기운영	5	2			3					
	기계운영	7	4			3					
	화공운영	2			1	1					
	사육운영	1	1								
전문경력관 소계		4	1		2	1					
	나군 소계	2	1			1					
	- 화생방요원	1	1								
	- 시청각 기자재 관리 담당	1				1					
	다군 소계	2			2						

	- 농기계교관	2			2						
연구직 합계		4	1			3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환경연구사	3				3					
지도직 합계		35			35						
지도사	농촌지도사	35			35						
별정직 합계		3	3								
별정 6급 상당	**소계**	1	1								
	별정	1	1								
별정 7급 상당	**소계**	1	1								
	별정	1	1								
별정 9급 상당	**소계**	1	1								
	별정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